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이광성 의원
- 나. 의안번호 : 제2264호
- 다. 발의일자 : 2021.03.31
- 라. 회부일자 : 2021.04.06

2. 제 안 사 유

- 현재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는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계량기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사용자들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계량기 동파는 보온상태 부실 등 수도사용자들의 관리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량기 관리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수도계량기가 동파나 자연재해로 파손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에 드는 비용에 대해 그 일부를 수도사용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수도법」 제41조제1항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분의 수도계량기 동파가 수도사용자등의 관리 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교체 비용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바, 수도사용자등에게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그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현황

- 현행 「수도법 시행령」 제32조는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관리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40조는 수도계량기 등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책임, 제42조는 수도계량기의 훼손·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2013년 3월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되는 경우 시민편익 도모 차원에서 계량기 교체 비용 전부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¹⁾하였으며, 2019년 9월에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훼손, 분실하여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에 한해 수도사용자등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바 있음.

제 42 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생략)

②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1) 개정사유 : 자연재해 및 한파에 의한 수도사용자등의 계량기 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물 공급 중단의 불편과 계량기대금 부담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

2) 수도사용자등의 수도계량기 관리 책임 강화(안 제42조제2항)

- 최근 3년간 수도계량기 동파현황을 살펴보면, 급격한 기온 하강이 원인이라 하지만 주로 보온조치 미비, 장기외출 등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건수가 12,888건으로 98.9%를 차지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²⁾을 시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수도계량기 원인별 동파현황(매년 겨울철 11.15 ~ 3.15 기준)

(단위: 건수)

연도별	계	수요가 관리소홀					심도 부족	휴무 상가등
		보온 미비	장기 외출	노출	보호통 뚜껑 미비	보호통 파손		
계	13,028	9,700	2,640	515	15	18	13	127
'20~'21	10,895	8,639	1,984	164	3	12	12	81
'19~'20	497	123	196	151	4	5	0	18
'18~'19	1,636	938	460	200	8	1	1	28

- 따라서 안 제42조제2항과 같이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 비용 일부를 수도사용자등에게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시와 수도사용자 양측에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 원인(기온하강, 관리소홀 등)을 미뤄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극심한 한파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동파예방을 위한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강화와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성능개선 등 다양한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등 수도사업자(서울시)의 역할 제고에도 보다 힘써야 할 것이며, 수도사용자등에게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할 것임.

2) '20~'21년 6억 1천만원(산출근거 : 10,895개×56,000원(계량기 1개당 단가 및 교체비용))